법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 신고포상금 확대 안내

- 이동판매차량(일명 홈로리)을 이용한 등유 주유 행위 적발시 100만원 지급 -

1. 배경 및 목적

○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(이하 '법')」 일부 개정(법 제41조의2)으로 **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**('21년 4월 21일~)

○ **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**을 위한 검사 사각지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

2. 등유 불법주유 신고 안내

○ **포 상 금** 주유소·일반판매소 : 100만원, 비석유사업자 : 10만원

○ **신고접수** 오일콜센터(1588-5166), 홈페이지(www.kpetro.or.kr)
 * 직통전화 : 063-260-0712(상담 후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)

○ **증빙자료**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* 불법현장 사진, 증거물(장소가 표시된 약도, 위법행위 시간대, 출입 이동판매차량 번호) 등

○ **신고절차**

신고접수 → 현장점검 → 결과통보 → 적발시 포상금 지급

주간 관광버스 등유 주유

야간 덤프트럭 등유 주유

※ 가짜석유·정량미달 판매행위도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 가능합니다.

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